

제 782 호

1980. 5. 30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편집: 문화공보관 심 계 섭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427 호: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 성신
조례중개정조례..... 3

◎ 교 시

제 182 호: 도시계획시설 (녹지) 지적승인..... 5

제 183 호: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못매분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6

제 184 호: 도시계획용도지구 (보존지구) 결정..... 6

제 185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7

제 186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결정및 변경결정, 지적승인 7

제 187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8

제 188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지적승인..... 9

제 189 호: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조정) 실시계획허가..... 9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 제 172 호 : 도시계획법 (쓰레기종말처리장) 실시계획공람공고.....10
- 제 173 호 :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에따른공람공고.....11
- 제 174 호 : 마포로주변재개발구역제 1 지구제 17 획지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11
- 제 176 호 :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12
- 제 177 호 : 제 10 회서울특별시관광민예품경진대회개최안내13
- 제 178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14
- 제 179 호 : 무교제 4.5 지구재개발사업시행기간연장을위한공람공고 14
- 제 180 호 : 서울역-서대문제 2 구역 1 획지재개발사업시행기간연장을위한공람공고15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 인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1980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1427 호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의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2)중 '가. 일반회계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0.6.1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서울특별시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일 반 회 계

| 직 급 별 | 정 원 | 정 원 내 용 |
|---------|-----|--|
| 2 급 울 류 | 3 | 행정직 2, 행정 및 시설직 1 |
| 3 급 갑 류 | 2 | 행정직 2 |
| 3 급 을 류 | 198 | 행정직 133, 행정 및 기계직 1, 행정 및 전기직 1, 행정 및 화공직 2, 행정 및 수산직 1, 행정 및 토목직 3, 행정토목 및 건축직 1, 행정 및 지적직 1, 기계 및 전기직 3, 전기직 1, 화공직 1, 화공 및 보건직 2, 화공 및 토목직 1, 화공 및 건축직 1, 농림직 3, 농림 및 토목직 1, 농림 및 건축직 1, 축산직 1, 축산 및 수의직 1, 의무 및 약무직 1, 의무 및 간호직 1, 보건 직 1, 토목직 16, 토목 및 건축직 7, 토목 및 지적직, 건축직 8, 지적직 2, 통신직 1 |
| 4 급 갑 류 | 366 | 행정직 228, 기계 및 전기직 23, 섬유직 1, 화공 및 보건직 13, 농림·축산 및 수의직 14, 약무직 2, 간호직 1, 수산직 1, 토목 및 건축직 68, 지적직 7, 통신 및 전송직 3 |

| 직 급 별 | 정 원 | 정 원 내 용 |
|---------|-------|--|
| 4 급 율 류 | 481 | 행정직 289, 기계 및 전기직 29, 화공 및 보전직 10, 농림·축산 및 수의직 10, 약무직 4, 간호직 2, 수산직 1, 토목 및 건축직 124, 지적직 10, 통신 및 전송직 2 |
| 5 급 감 류 | 27 | 행정직 17, 토목 및 건축직 7, 지적직 2, 통신원 1 |
| 5 급 율 류 | 7 | 행정직 6, 건축직 1 |
| 고 용 원 | 578 | 타자원 82, 필생 1, 제도사 5, 목공 2, 수위장 1, 수위 25, 난방공 1, 운전원 140, 민원보조원 12, 전화교환원 18, 수리공 2, 전공 14, 통신원 3, 사진사 8, 기계공 6, 사육원 1, 대장정리원 70, 의무원 1, 경비원 9, 감시원 11, 교도원 3, 청부 30, 전달부 1, 예표원 130, 주차감시원 2 |
| 별 정 직 | 9 | 2 급 율 류 상당 1, 3 급 감 류 상당 1, 3 급 율 류 상당 5, 4 급 감 류 상당 2 |
| 소 방 직 | 54 | 지방소방정감 1, 지방소방감 3, 지방소방령 9, 지방소방위 8, 지방소방장 8, 지방소방교 10, 지방소방사 15 |
| 계 | 1,725 | |

<별표 2>

서울특별시구청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일반 회 계

| 직 급 별 | 정 원 | 정 원 내 용 |
|---------|-------|---|
| 3 급 감 류 | 60 | 행정직 34, 행정 및 토목직 9, 행정·토목 및 건축직 17 |
| 3 급 율 류 | 298 | 행정직 238, 행정 및 토목직 17, 행정·화공 및 보전직 5, 행정 및 농림직 13, 토목직 8, 건축직 17 |
| 4 급 감 류 | 873 | 행정직 685, 행정·화공 및 보전직 23, 농림직 31, 축산직 2, 보전직 19, 토목 및 건축직 88, 지적직 25 |
| 4 급 율 류 | 1,087 | 행정직 775, 기계 및 전기직 16, 화공직 12, 농림직 34, 축산 및 수의직 10, 보검직 35, 토목 및 건축직 177, 지적직 28 |
| 5 급 감 류 | 1,510 | 행정직 1,158, 기계 및 전기직 25, 화공직 21, 농림직 43, 축산 및 수의직 8, 보검직 34, 간호직 1, 토목 및 건축직 190, 지적직 60 |

| 직 급 별 | 정 원 | 정 원 내 용 |
|---------|-------|--|
| 5 급 을 류 | 1,534 | 행정직 1,198, 기계 및 전기직 11, 화공직 1, 농업직 18, 축산 및 수의직 7, 보건직 21, 토목 및 건축직 211, 지적직 67 |
| 고 용 원 | 1,267 | 타자원 158, 제도사 2, 수의장 17, 수위 11, 운전원 230, 민원보조원 34, 전과교환원 51, 전공 85, 사진사 3, 기계공 25, 대장정리원 51, 의무원 13, 원정 35, 경비원 6, 감시원 202, 청부 72, 전달부 17, 수로원 17, 노인정관리인 10, 주차감시원 228 |
| 계 | 6,659 | |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82 호

도시계획시설(녹지)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29 호

(78.8.26)로 결정 고시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5. 29

서울특별시장

㉠ 시설녹지 지적승인 조서

| 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신 설 | 경부제3 녹지 | 신길동 67, 68 일대 | 9,000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83 호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뚝배분구)
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9 호
(76.3.13) 및 제 230 호
(79.5.29) 로 실시계획인가된 반
도특정가구 정비지구 뚝배분구 정
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5 조,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규정에 의거 변경인
가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 1
과 및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비치
하고 이해 관계인의 공람에 공한
다.

1980. 5.29

서울특별시장

가. 시행자의 주소, 성명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소공동 1 번지

성명 : 당초-주식회사 호텔롯데

대표 신격호

번경-주식회사 호텔롯데
대표 강진우

나. 사업기간

당초 : 1975.12 ~ 1980. 5.31

변경 : 1975.12 ~ 1980.10.31

(5 개월 연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184 호

도시계획용도지구 (보존지구)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구 중
보존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 구청 도시정비
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
게 한다.

1980. 5.29

서울특별시장

○ 보존지구 결정조서

| 위 | 치 | 면적 (㎡) | 비고 |
|----------------------------------|---|-----------|----|
| 강서구 방화, 공랑, 내발산, 외발산, 가양, 마곡동 | | 6,550,000 | |
| 부천시 고강동 일대 | |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 | |

○ 서울특별시고시제 185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 고시제 22호(80.1.25)로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건설부고시 제463호(79.12.10)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5.30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의시행지: 성북구 정능동 산 16-1 외 2필지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학교법인 성한학원
- 다. 면적및규모: 해당지번 총면적 39,742㎡중 5,967.5㎡
- 라. 시행자주소성명: 성북구 정능동 산16-1 학교법인 성한학원 이사장 김영순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1) 착수년월일: 80. 6
- 2) 준공예정일: 81. 6.30

바. 위치및계획평면도: 별첨(도면생략)

사. 공사설계도면: 별첨(도면생략)

*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18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및변경결정.지서승인

-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463호(79.12.10) 권한의임사함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1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5.30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 (학교) 조서

|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 신설 | 중 학교 | 마포구성산동 127-7 일대 | 14,142㎡ (4,278명) | |
| 신설 | 중 학교 | 성북구중암동산 10 일대 | 14,255㎡ (4,312명) | |
| 기정 | 신일중, 고등학교 | 도봉구미아동 193 외 12 | 88,523㎡ (26,778명) | |
| 변경 | " | " | 88,683㎡ (26,827명) | (49명)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도시계획시설 (도로) 조서

| 구분 | 등급 | 류별 | 폭원 | 연장 | 시점 | 종점 | 비고 |
|----|----|----|----|------|--------------|--------------|----|
| 기정 | 소로 | 3 | 6m | 115m | 성산동 129-3 일대 | 성산동 127 일대 | |
| 변경 | " | 3 | 6m | 115m | " | " | 폐지 |
| 기정 | 소로 | 4 | 4m | 40m | 미아동 195-1 | 미아동 149-2 일대 | |
| 변경 | " | 4 | 4m | 40m | " | " | 폐지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7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198 호 (71.4.7) 로 결정고시되고 서울시고시 제 386 호 (78.8.3) 로 재결정된 대 3 - 60 호노선 (노원교 - 도봉동시계)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13 조

및 건설부고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표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5. 31.

서울특별시장

○ 도로지적승인조서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시점 | 종점 | 비고 |
|------|----|----|----|-----|--------|-----|-------|----|
| 지적승인 | 대로 | 3 | 60 | 25m | 1,540m | 노원교 | 도봉동시계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88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177 호 (80.5.27)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

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조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5.31.

서울특별시 시장

○ 도시계획시설 (시장) 지적승인조서

| 구분 | 시설명 | 시장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 신설 | 소매시장 | 갈현중앙시장 | 은평구갈현동 424 일대 | 459.9평 | 폐지: (구주소: 서대문구대조동 49-1 외 6 필) |
| 변경 | 매지 | 삼성시장 | 은평구역촌동 16 일대 | 497 평 | |

※ 별첨 도면과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89 호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조성) 실시계획허가

1. 서울시고시 제 30 호 (74.3.20) 로 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 (운동장조성) 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 시행령 25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5.31

서울특별시 시장

1. 사업시행지: 은평구 신사동 300 외 88
2. 사업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 (운동장조성) 승실 학원
3. 면적및규모: 189 평
4. 시행자주소및성명: 학교법인 승실 학원 이사장 황태은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허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일: 허가일로부터

- 6. 위치 및 계획면적 : 별첨 (도면생략)
 - 7. 공사설계도면 :
 - 8. 공사비 : 91,290,000 원 (구천백이만구천원)
- * 도면은 은평구청 도시정비과보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72 호

도시계획법(쓰레기종말처리장)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07 호 (78.3.18) 호로 도시계획사업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실시계획 인가된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144 호 (80.4.22) 로 사업실시계획이 일부변경 승인된 마포구 상암동 1538-1 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쓰레기종말처리장) 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외 소

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0. 5.29

서울특별시

다 음

- 가. 사업시행지 : 마포구상암동 1538-1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쓰레기종말처리장)
- 다. 사업규모및면적 : 132,662 ㎡ (40,130 평)
- 라.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마포구상암동 485-24 한국경화벽돌(주)
대표이사 이 용 진
- 마.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1) 착수에정일 : 사업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7 일 이내
 - 2)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80.12.31 까지
- 바. 사용또는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별첨)
- 사.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없음
-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 자.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바람.

토 지 조 서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소유자주소 | 성 명 | 바 고 |
|--------|-----|---------|-------|-----|-----|
| 1538-1 | 잡종 | 132.662 | 서울특별시 | |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73 호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
기간에따른공람공고

1. 당시 도시계획 재개발사업구역중
사업계획결정된 구역(지구)에 대
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기
간을 지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제 1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재개발법
제9 조규정에 의한 토지동리 소유
자는 동 기간내에 신청요건을 갖
추어 인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
라며 동 기간내에 인가신청이 없
을시는 재개발법제 10 조및 동법제 11 조
규정에의거 지방자치단체등이나 제3
개발자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가. 구역(지구)별 인가신청기간 지정내역

| 사업명칭 | 시행구역(지구) | 위 치 | 시행면적 | 인가신청기간 | 비고(사업계획결정) |
|--------------------|-------------------------------|--------------------------|----------|--------------------|-------------------------|
| 소공 4 구역 | 소공 4 구역 1-9 획지 | 중구소공동 30,51 일대 | 18,783㎡ | 80.6.1- 82.5.31 | 건고시제 147 호 (80.6.19) |
| 마포로 주변 구역제 1 지구 | 마포로 주변 구역제 1 지구 1-51 획지 | 마포구마포동 도화동, 동역 동일대 | 198,136㎡ | " | 건고시제 146 호 (80.5.19) |

2. 관계서류는 당시 건축국 재개발
1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 있다.

1980.5.30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174 호

마포로 주변재개발구역제 1 지구자17 획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345 호 (79.9.21) 로

구역지정되고 동부고시 146 호 (80.5.
19) 로 사업계획결정된 마포로 주변
재개발구역 제 1 지구제 17 획지 토지
소유자인 신원통상주식회사(대표이
사 박성철)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72 조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 동법
제 15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한다.

1980.5.30

서울특별시 장

다 음

가. 시 행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도화
동 16-9 의 1 필지일대

나. 시 행 면적 : 1,447.89 ㎡ (사업시행
인가시 확정)

다. 대지면적 : 1,298.8 ㎡

라. 공공용지부담 : 149.09 ㎡ (사업시
행인가시 확정)

마. 건축규모

건축면적 : 609.675 ㎡ (전폐율
46.9 %)

연 면 적 : 6,569.46 ㎡ (용적율
377.43 %)

층 수 : 지상 10 층, 지하 2 층

용 도 : 일반시설

바.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삼각동 115번지
신원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박성철)

사. 시 행 기간 : 시행인가일로부터 81.12.31

아. 공 략 기간 : 80.5.29-80.6.27 (30 일간)

가. 공 략 장소

1) 서울특별시 건축국 개개발 1 파
(70-4627)

2) 서울특별시 북구 삼각동 115번지
신원 통상주식회사 (75-9280)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76 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고시제 456 호 (1978. 9. 6)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공사구간
내에 저촉되는 토지와 도시계획사
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
법제 25조 및 동법 34 조 규정에
따라 공 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응하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잘음함.

3. 관련도서는 운영출장소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연람토록함.

1980. 5. 30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가. 사업장위치 : 은평구 진관내동
78번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진관내동 78번지
주변 하수도 공사

다. 사업의규모 : 암거공 (3.5 × 1.5)
B = 6 m L = 205 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은평구
청장)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50 일

나. 사용토는수용할토지 : 별첨 토지조
서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별첨
토지조서참조

토 지 조 서

| 순 위 | 토 지 소 개 지 | 지 목 | 저 축 평 수 | 소 유 자 | |
|-----|--------------|-----|---------|-------|---------|
| | | | | 주 소 | 성 명 |
| 1 | 은평구진관내동 75-1 | 하 권 | 372 평 | 서 울 시 | 서 울 시 경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77 호

제 10 회 서울특별시 관광민예품
경진대회 개최 안내

관광민예품의 개발육성과 수출상품
저변확대 및 수출의욕 고취를 도모
하기 위한 "제 10 회 전국 관광민예
품 경진대회 서울특별시 예선대회"
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출품 있기를 바란다.

1980.5.30

서울특별시 장

1. 출품기간: 1980.8.5~8.9(5일간)
2. 출품장소: 서울특별시 종합관광안내
소
3. 출품대상품목
 - 가. 상품화가 가능하고 수출이 유
망한 신개발 토산품
 - 나. 고유한 기술과 전통에 바탕을
둔 민속공예품

- 다. 외국 관광객의 기호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관광기념품
- 라. 기존제품에 대한 디자인 및
원, 부자재 개선 제품
- 4. 출품 및 반품절차
 - 가. 출품원서(소경양식)와 출품작
을 동시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 나. 반품절차: 본선출품작이외의 작
품은 예선 종료 10 일 이내에 접수
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본
인이 인수하여야함. (단, 본선
입상작은 주최측에 귀속)
- 5. 심사결과발표 및 시상
 - 가. 심사결과발표: 1980.8.20(수요
일)
 - 나. 시 상
 - 최우수상 1명 상장및부상 80만원
 - 우수상 1명 상장및부상 50
 - 장려상 2명 상장및부상각 10
 - 가작 3명 상장및부상각 5
- 6. 목 건
 - 가. 입상된 우수작품 및 입상작품은

서울특별시를 대표하여 전국 관광민예품 경진대회에 출품(단, 지역 예선등 거치지 아니한 작품은 본선에 출품할 수 없음)나, 본선 대공명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는 주최측 부담으로 해외여행편의 제공

다. 본선에 입상한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민예품 전문생산지정업체로 지정받을수 있음.

7.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국 관광과에 문의하기를 바란다. (전화 78-1051, 75-6957)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78 호

공인신조사용 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물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0.5.29

서울특별시 장

1. 공 인 명 : 강동구 경리관의 인
2. 사용개시일 : 80.6.5
3. 공인확인명 :

인
영



공인명 강동구 경리관의 인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79 호

무교제 4, 5지구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연장을위한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198호 (77.6.28)로 시행인가된 무교제 4, 5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기간을 변경조례 아래와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 15조규정에 의거 변경사항을 공람공고한다.

1980.5.31

서울특별시 장

가. 변경내용

- 사업시행기간
- 당초 : 77.8.1-80.6.30
- 변경 : 77.8.1-80.11.30

나. 공람기간 : 80.5.31-80.6.29 까지

다. 공람장소
 서울특별시건축국재개발1과
 (70-4627)
 주식회사 코오롱 (나이론)
 (778-9721)

◎ 서울특별시공고제 180 호

서울역-서대문제2구역1획지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연장을위한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제 328 호 (78.7.3)
 에 의거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된 서울역-서대문 제2구역1획지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기간을 변경코자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
 을 공람공고한다.

1980.5.31
 서울특별시장

가. 변경내용

1) 사업시행기간

당초 : 78.7.3-80.6.30

변경 : 78.7.3-80.7.31

사유 : 사업시행인가조건 이행
 지연

나. 공람기간 : 80.5-80.6 까지

다.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건축국 재개발1과
 (70-4627)

남광토건주식회사 (74-7905)